

2020년도 3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0. 11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□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□ 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0. 7. 1. ~ 9. 30.(2020년 3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
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□ 접수결과

- 2020년 3분기 총 119건 접수

[표 1] 2020년 3분기 창구별 접수현황 (단위 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7월	8월	9월
공직자비리신고	73	19	23	31
공 익 신 고	44	11	18	15
부 정 청 탁	2	1	1	0
퇴직공무원특혜	-	0	0	0
합 계	119	31	42	46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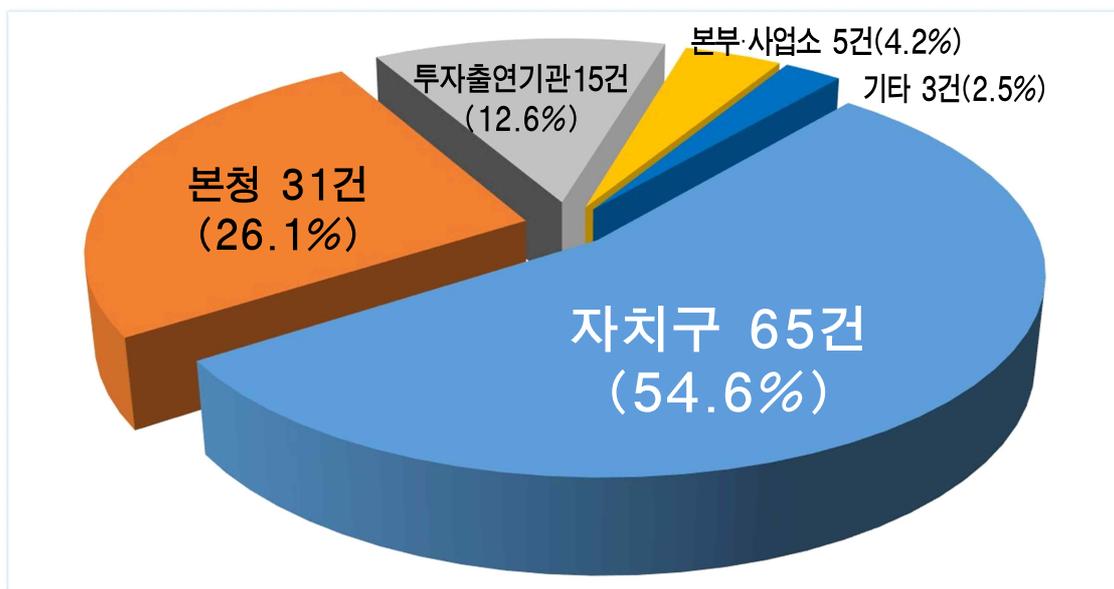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응답소/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119 (100%)	111 (93.3%)	6 (5.0%)	2 (1.7%)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65건(54.6%)으로 가장 많았음
 - 건축법,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39건
 -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등 26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31건(26.1%), 본부/사업소 소관 5건(4.2%)
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4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27건
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공직자비리신고 4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15건(12.6%), 기타 3건(2.5%)
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14건
 - 기타 3건은 시 소관사무가 아닌 건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19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90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90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119 (100%)	44 (37.0%)	46 (38.7%)	29 (24.3%)

*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'공익제보'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"부패행위"신고	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"공익침해행위"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67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□ 공익제보 해당 90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44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부 정 청 탁	본 청	2	업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심
	투자출연기관	1	
	기 타	1	
	소 계	4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11	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부·사업소	3	
	자 치 구	13	
	투자출연기관	2	
	소 계	29	
불 공 정 행 위	본 청	2	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
	투자출연기관	2	
	소 계	4	
복 무	본부·사업소	1	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불친절,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
	자 치 구	3	
	투자출연기관	3	
	소 계	7	
총	계	44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46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감염병 예방법	1	본부사업소	개선1	체육시설 집합금지 위반
	4	자치구	개선3, 해당없음1	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
	1	투자출연	개선1	문화시설 집합금지 위반
건축법	5	자치구	과태료1, 해당없음1, 취하2, 진행중1	불법 건축물 신고 등
공동주택관리법	1	자치구	권한없음1	부실공사로 인한 누수 발생
국토계획법	1	본청	해당없음1	비오姆1등급 지정선 복구 등
기초생활보장법	1	자치구	해당없음1	기초생활수급권 중지 이의신청
도로교통법	1	본청	개선1	위탁업체 차량의 불법주차
도시교통정비법	1	자치구	진행중1	주차장상한제 정책 1급 제한구역에 주차장 건립
도시정비법	5	자치구	권한없음1, 해당없음1, 진행중3	재건축사업 관련 비리 신고 등
보조금법	1	기타	권한없음1	국가보조금 부정 수령
산림자원법	1	자치구	해당없음1	가로수 훼손
소방기본법	1	본청	개선1	소방차량 운행 시 법규위반
소비자기본법	1	자치구	권한없음1	웨딩홀업체의 계약위반
식품위생법	7	자치구	과태료1, 개선1, 해당없음1, 중복3, 진행중1	식당의 위생불량 등
약사법	1	자치구	고발1	약국의 약봉투 미지급
여객자동차운수법	1	본청	개선1	버스기사의 운행업무 부적정
영유아보육법	2	자치구	개선2	어린이집의 부적절한 운영방식
원산지표기법	2	자치구	취하1, 권한없음1	원산지표기 위반업체 신고
주차장법	2	자치구	진행중2	공영주차장 건립허가 조사
지방세법	1	자치구	해당없음1	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취득세 탈루
폐기물관리법	2	자치구	개선2	건축자재 무단 적치 등
표시광고법	1	자치구	해당없음1	배달앱 허위광고
환경영향평가법	2	자치구	진행중2	공영주차장 건립 과정 부적정
총 계	46		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0.11.10. 현재)

□ 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 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 33		종결 51			진행중	취하
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없음	권한없음	중복		
119	5	28	28	17	6	22	13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 (단위 : 건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패	불합리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	감사위원회	주의요구
2	공익	반찬 재활용 등 식당위생 불량	자치구	과태료(10만원)
3	공익	약국의 조제 약제 표시의무 위반	자치구	고발(벌금 대상)
4	부패	구 공무원 품위위반	자치구	신분상 조치(훈계)
5	공익	공사현장 안전장치 미흡	자치구	과태료(500만원) 및 시정명령